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37호 2021. 7. 29.(목)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10호 사천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 1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980호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
- 사천시 공고 제99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 사천시 공고 제99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사천시 훈령 제410호

사천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7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 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사천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말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제8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사항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 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④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사천시 공고 제2021-980호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 5조제1항제1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청(참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71, FAX: 831-6053)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농업·농촌”을 “사천시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관 련 법 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사천시 공고 제2021-99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지적재조사사업 및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및 사후관리,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 총수: 964명 → 972명(증 8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947명 → 955명(증 8명)
-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변동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1) 총계: 964명 → 972명(증 8명)
- 2) 일반직 계: 933명 → 941명(증 8명)
 - 가) 3급: 1명(변동없음)
 - 나) 4급: 7명(변동없음)
 - 다) 5급: 51명(변동없음)
 - 라) 6급 이하: 874명 → 882명(증 8명)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시”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사천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사천시”로, “964명”을 “9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47명”을 “95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947명</p> <p>2. (생략)</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u>사천시</u>-----</p> <p>-----</p> <p>-----</p> <p>-----.</p> <p>제2조(정원의 총수) <u>사천시</u>-----</p> <p>----- <u>972명</u>-----</p> <p>-----.</p> <p>1.----- <u>955명</u></p> <p>2. (현행과 같음)</p>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972							
정무직 계		1							
단체장(시장)		1							
일반직 계		941							
	3급	1	1						
	4급	7	4	1	2				
	5급	51	26	2	6	3	1	7	6
	6급 이하	882							
별정직 계		-							
	6급 상당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지도직 계		29							
	지도사	29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사천시 공고 제2021-99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지적재조사사업 및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및 사후관리,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1) 정원의 총수: 964명 → 972명(증 8명)

2) 6급: 246명(변동없음)

가) 행정+농업: 8명 → 6명(감 2)

나) 행정+농업+해양수산: 2명 → 1명(감 1)

다) 행정+농업+시설: 5명 → 7명(증 2)

라) 보건+의료기술+간호: 4명 → 3명(감 1)

마) 행정+사회복지+식품위생: 1명 → 0명(감 1)

바)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0명 → 1명(증 1)

사)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0명 → 1명(증 1)

아)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명 → 2명(증 1)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3) 8급: 229명(변동없음)

가) 행정: 53명 → 52명(감 1)

나)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0명 → 1명(증 1)

4) 9급: 148명(증 8명)

가) 세무: 2명 → 3명(증 1)

나) 시설: 9명 → 10명(증 1)

다) 행정+사회복지: 19명 → 20명(증 1)

라) 행정+농업: 3명 → 4명(증 1)

마) 행정+보건: 1명 → 2명(증 1)

바) 행정+시설: 10명 → 11명(증 1)

사) 공업+시설: 0명 → 2명(증 2)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부서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직렬별 정원) 사천시----- ----- -----.</p> <p>제3조(부서별 정원) ----- ----- <u>사천시장</u>----- -----.</p>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972	516(3)	17	152	51(1)	26	119	9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41	514(3)	17	123	51(1)	26	119	9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렬별										
5급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6	154	3	26	13	6	30	14	
	행정	49	44	2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14			1				
	보건진료	2			2					
	행정+세무	13	9					1	3	
	행정+사회복지	19	11			1	1	3	3	
	행정+농업	<u>6</u>	2		1		2	<u>1</u>		
	행정+공업	2	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3					
	행정+시설	26	24	1			1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5			5					
	공업+시설+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9	9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u>1</u>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u>7</u>	3					<u>4</u>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환경+위생	2				2				
	행정+운전+방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u>3</u>			<u>3</u>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u>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u>	<u>1</u>						<u>1</u>		
	<u>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u>	<u>1</u>						<u>1</u>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u>2</u>			<u>2</u>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59	151	3	40	13	5	27	20	
	행정	55	38	2		2	1	9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6	13			2	1			
	수의	2			2					
	보건진료	7			7					
	행정+세무	7	6					1		
	행정+사회복지	11	7			1			3	
	행정+전산	4	3			1				
	행정+농업	5	1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8	27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2			2					
	보건+의료기술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9	7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8	1				2		5	
	행정+농업+시설	6	3					2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 수산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운전	4	2		1	1				
8급	소계	229	108	4	41	11	10	26	29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	52	22	1		1	5	11	12	
	세무	2	2							
	사회복지	11	4				2	2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간호	18			13		1	2	2	
	보건진료	4			4					
	시설	14	13			1				
	행정+세무	9	5					1	3	
	행정+사회복지	13	10			1	1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4	4							
	행정+속기	1		1						
	행정+농업	4	1		1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보건+간호	8			8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시설	20	16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u>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u>	<u>1</u>							<u>1</u>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운전	5	2		1	2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u>148</u>	<u>70(3)</u>	4	<u>8</u>	11(1)	4	29	22	
	행정	29	7(3)			2(1)	1	11	8	
	사회복지	6	3				1		2	
	공업	1	1							
	농업	1			1					
	시설	<u>10</u>	<u>7</u>			1		2		
	세무	<u>3</u>	<u>3</u>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보건	1			1					
	환경	1	1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u>20</u>	<u>10</u>					8	2	
	행정+농업	<u>4</u>			<u>2</u>		1		1	
	행정+녹지	3	3							
	행정+보건	<u>2</u>			<u>2</u>					
	행정+시설	<u>11</u>	<u>10</u>					1		
	행정+숙기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u>공업+시설</u>	<u>2</u>	<u>2</u>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	4	4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속기	1			1							
	운전	5	2		2		1					
	사무운영	5	3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상당	비서	-	-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 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 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

사 천 시 공 보

제737호

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